

## 배 경

당사자들은 상호 비밀 정보를 수령하고자 한다.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 조건에 따라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비밀정보를 서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 1. 비밀유지

#### 1.1 비밀정보의 처리

비밀정보수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며, 그 관련자 및 대표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비밀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밀정보를 공개하거나 공표하지 않는다.

(나) 허가되지 않은 접근, 사용, 복사, 공개, 파손 또는 파괴로부터 모든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보안장치를 두어 효율적으로 유지한다.

(다) 이 약정서 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라) 계약의 불이행을 방지하거나 불이행의 가능성을 예방하고, 법정절차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것임을 불문하고 어떤 자에 의한 비밀정보제공자의 권리 침해 또는 그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요청을 포함하여 비밀정보제공자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른다.

(마) 비밀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는 명시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비밀정보에 기인하거나, 비밀정보를 사용하는 문서 기타 기록의 일부를 어떠한 형태로든 재생산하지 않는다.

(바) 필요시 회수할 수 있도록 비밀정보를 저장한다.

#### 1.2 비밀정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비밀정보수령자가 더 이상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지 않고자 할 때에는 비밀정보제공자에게 이에 대하여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3 비밀정보의 소유

비밀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모든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비밀정보제공자에 귀속된다.

## 2. 허용된 이용 및 제공

### 2.1 명시된 목적을 위한 이용

비밀정보수령자 및 그 관련자 및 대표자는 오로지 명시된 목적만을 위하여 비밀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오직 상세견적을 위한 검토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2.2 정보의 제공

제 2.4조에 따라 비밀정보수령자는 비밀 정보 제공 이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자, 대표자 및 제 3자에게 명시된 목적과 관련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자

(나) 비밀정보제공자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지고 있음을 비밀정보수령자로부터 통보 받은 자

(다) 제 3자의 경우, 비밀정보제공자를 위하여 이 약정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양식으로 별도의 비밀유지약정서를 체결한 자

### 2.2 제 3자에 의한 위반

비밀정보수령자는 이 약정서 제 2.3조에 따라 비밀정보가 제공되는 관련자나 대표자로 하여금 본 약정서상 비밀정보수령자의 의무를 다 하도록 또는 의무위반을 구성하게 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4 정보제공에 관한 권한

비밀정보제공자는 절대적인 재량권 하에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비밀 정보를 자유로이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 3. 제한

이 약정서의 조항은 다음 각 호에 기재된 비밀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이미 공개되었거나 사후에 공개된 정보. 단, 비밀정보수령자, 관련자 또는 그 대표자가 비밀정보제공자와 체결한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약정에 위반하여 공개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비밀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수령자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정보 공개 당시 비밀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는 비밀정보

(다) 제 3자가 비밀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정보. 다만 제3자가 비밀정보제공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위반여부에 대해 모르는 경우

(라) 법률이나 법원, 재판소, 당국, 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의 요청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요구되는 비밀정보. 단,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비밀정보수령자는 제3조

(라)항에 따라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이전에 비밀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제공 요구에 대한 서면통지를 즉시 교부하여 비밀정보제공자가 적절한 보호명령을 구하거나 비밀정보의 제공 요청 범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정보수령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거나 요청에 부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비밀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 4. 비밀정보의 반환

#### 4.1 반환 또는 폐기

제4.2조에 따라 비밀정보제공자가 요청하는 경우 비밀정보수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이행하며 관련자 및 그 대표자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비밀정보를 포함한 모든 문서, 제2.2조에 언급된 모든 서류 및 동 서류들의 사본을 비밀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나) 다른 정보와 통합되어 있는 비밀정보를 포함한 모든 비밀정보를 전자 저장매체에서 삭제한다.

#### 4.2 보유권

제4.1조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법률상 보유하도록 요구되는 비밀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 4.3 면책 없음

제4.1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비밀정보수령자의 어떠한 행위도 비밀정보수령자, 관련자 또는 그 대표자를 이 약정서 상 그들의 의무로부터 면책하지 아니한다.

## 5. 계약기간

본 약정서의 계약기간은 계약일 이후 3개월까지로 한다.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가 해지된다하더라도 비밀정보 수령일로부터 10년간 이 약정서에 명시된 비밀정보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6. 기타사항

### 6.1 준거법

이 약정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에 따라 해석된다. 이 약정서와 관련하여 하한 청구나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으로 제기한다.

### 6.2 수정

이 약정서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만 수정될 수 있다.

### 6.3 양도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동의는 불합리하게 유보되어서는 아니 된다.)

### 6.4 일부 무효

이 약정서의 조항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거나, 구속력이 없거나 혹은 위법인 경우, 당해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하자가 없게 되고 이를 배제하더라도 계약의 내용이 유지 될 수 있다면 당해 조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거나, 구속력이 없거나 위법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 6.5 손해배상

당사자들은 각자의 담당자 및 종업원이 비밀유지 의무 등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입증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그 손해 회복을 위하여 요구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6.6 통지

이 약정서에 따라 예정되거나 요구되는 통지 또는 기타 통신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기 기재된 주소로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교부되어야 한다.

## 6.7 부분

이 약정서는 수 개의 부분으로 작성되며 각 부분은 원본으로 간주되고 모든 부분은 하나의 동일한 증서를 구성한다.

# 7. 정의 및 해석

## 7.1 정의

달리 상반되지 않는 한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비밀정보제공자와 관련하여 비밀정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명시적 문서(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명시된 목적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수령자, 그 관련자 또는 대표자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디스크, 시각적 프리젠테이션 및 기타) 모든 구두 통신, 문서 및 기타 정보

(나) 비밀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수령자, 그 관련자 또는 대표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거나 제공해왔다는 사실

(다) 비밀정보수령자, 그 관련자나 대표자가 명시된 목적에 관하여 비밀정보제공자와의 협의 또는 상기 협의 내용에 참여할 수 있거나 참여해왔다는 사실 및/또는 이를 철회하였다는 사실

(라) (당사자들의 신원을 포함하여) 이 약정서의 조건  
비밀정보제공자라 함은 (주)유자인 을의미한다.

당사자들이라 함은 (주)유자인, 및 슈 의미하며 “당사자”는 이들 중 하나를 의미한다.  
비밀정보수령자라 함은 슈 개발사)을 의미한다.

관련자라 함은 어느 당사자와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의 관계회사를 의미한다.

대표자라 함은 어느 당사자와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 또는 해당 당사자의 관련자의 등기이사, 임직원, 투자자 또는 자문인을 의미한다.

제3자라 함은 명시적 목적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수령자 또는 그 관련자와 약정을 체결한 파트너, 합작투자회사 또는 기타의 자를 의미한다.

## 7.2 해석

상반되지 않는 한 이 약정서에서

(가) “문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회로, 회로 레이아웃, 도면, 내역, 자료, 기록 및 기타 비밀정보가 저장되거나 재생산되는 수단을 포함한다.

(나) (권리를 포함하여) “어떤 것”은 그것의 일부를 포함한다.

(다) “사람들” 또는 “것들”이라 함은 공동으로 둘 이상 및 개별적으로 그 각각을 지칭한다.

(라) “포함하여”라는 표현은 제한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마) 단수는 복수를 포함하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바) “동의”라 함은 사전 서면동의를 의미한다.

(사) 여하한 행위를 하지 않을 당사자의 의무는 그러한 행위를 용인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주)유자인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156, 503,902호

대표이사 : 이 호 결 (인)

슈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96-24, 301호

대표이사 : 김 대 (인)

주식회사 프리모아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4층 409호

대표이사 : 한 경 원 (인)